

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안

의안 번호	239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6. 6. 5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「지역보건법」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위반 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(지역보건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)

2. 주요골자

- 가.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(건강진단, 예방접종, 순회진료 등)를 하고자 하거나
- 나.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할 때 지역관할 보건소에 신고 하게 함으로써 지역 보건 의료의 질 저하를 예방하고
- 다. 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라는 유사명칭 사용을 근절하기 위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역보건법」 제18조, 제21조, 제26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입법예고 : 2006. 4. 10~ 5. 1(20일간) ▷ 제출의견 없음
- 마. 기 타 : 2006. 5. 23 ▷ 규제심사완료

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과태료 부과 등)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3조 (의견진술)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②제1항의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제4조 (이의신청 등)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통보 하여야 하며,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5조 (준용규정)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과태료 부과기준(제2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.

나.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.

다. 나목의 경우 3차위반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.

2. 개별기준

부 과 대 상	근 거 법 령	부과금액(만원)		
		1차위반	2차위반	3차위반
가. 「지역보건법」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	「지역보건법」 제26조제1항제1호	30	50	100
나. 「지역보건법」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	「지역보건법」 제26조제1항제2호	50	100	150